정책토론회

통진당 잔존세력의 반국가활동,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일 시 | 2016년 9월 2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 | 자유민주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

〖프 로 그 램〗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09:45~10:00	■ 등록	
10:00~10:15	■ 개회	

사회 : 박인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

10:15~10:35	■ 발제1. 구 통진당 세력의 재건 실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10:35~10:55	■ 발제2. 통진당 잔존세력 활동의 反헌법성	**김상겸** 동국대 교수
10:55~11:05	■ 토론1	**이동호** 자유민주연구학회 사무총장, 前 전대협 국장
11:05~11:15	■ 토론2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11:15~11:30	■ 종합토론	

〖목 차〗

발 제

■ 구 통진당 세력의 재건 실태 ——— 09

유 동 열 (자유민주연구원장)

■ 통진당 잔존세력 활동의 反헌법성 ——— 19

김 상 겸 (동국대 교수)

토 론

■ 토론1 ——— 27

이 동 호 (자유민주연구학회 사무총장, 前 전대협 국장)

■ 토론2 ——— 29

이 옥 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자유민주연구원·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통진당 잔존세력의 반국가활동,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발 제

[발제 ①]

구 통진당 세력의 재건 실태

유 동 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목 차

Ⅰ. 문제제기: 헌법정신 실종과 국가의 직무유기
Ⅱ. 통진당 세력의 재건 실태
Ⅲ. 통진당 세력 재건의 문제점
Ⅳ. 정책제언
부 록: 헌법재판소 결정문으로 본 통진당의 反헌법성

Ⅰ. 문제제기: 헌법정신 실종과 국가의 직무유기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은 결코 헌법으로 보호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유사한 목적과 활동을 행사하는 정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헌법질서 수호의지를 명백히 한 것이다.

그러나 통진당이 해산된 지 1년 9개월이 넘었는데, 통진당은 간판만 내렸을 뿐 구 통진당에서 反헌법적 활동을 주도한 핵심세력과 당원세력들은 아직 건재하며 거리를 활보하며 종래의 투쟁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민중연합당이다. **구 통진당 세력이 주도가 되어 2016년 2월 27일 결성한 민중연합당**은 제20대 총선에 통진당 출신을 대거 출마시킨바 있다. 당시(2016.3.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중연합당에게 여성추천보조금 9,100만원을 지원**한바 있다. **위헌정당인 통진당 후신에게 국민세금으로 정당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지난 8월 14일 민중연합당은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전열을 정비하며 활동해 오고 있다. 2기 민중연합당 당직자의 상당수가 구 통진당의 핵심세력인 범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이다. 자유민주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민중연합당의 중앙당, 지역당직자와 총선출마자 등 300여 명 중

78%가 구 통진당 세력이고 이석기의 RO출신도 48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언론과 우리사회 일각에서 민중연합당을 '도로 통진당'이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한편 20대 총선에서 구 통진당 출신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2명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헌법기관인 국회에 진출하는 웃지 못 할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이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결정**했는데, 구 통진당 출신들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통진당의 아류격인 민중연합당을 창당하고, 대거 총선에 출마하고 또한 통진당 출신이 아무런 제약 없이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된 것은 위헌정당 해산의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이다.

한마디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정확히 말하면 검찰 등 사법당국)의 직무유기 행위**이다.

Ⅱ. 최근 통진당 세력의 재건(민중연합당) 실태

1. 민중연합당의 결성과 인적구성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결정전인 2014년 11월 23일 개최한 '임시 전당대회와 당사수 결의대회'에서 당시 원내대표인 오병윤이 "해산결정이 나오면 다시 당을 만들겠다."라고 발언하며 재창당 의지를 명백히 한바 있다.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 해산이 결정되자, 「민주수호와 진보당 해산반대를 위한 원탁회의」(일명 원탁회의, 2014.11.6. 결성)란 짝퉁 진보진영 원로인사들이 모여 12월 20일 3차 원탁회의을 소집하고 "2017년 정권장악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국민운동체의 결성을 결의"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구 통진당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2015년 6월 10일 「민주수호 국민행동」을 결성하였다. 동 조직은 산하에 '민족수호 광주운동본부', '서울민주행동', '경남민주행동', '민주수호 경기남부협의회'와 같은 50개의 위장조직을 만들어 당원들을 규합함으로써 역량을 보존에 주력하였다.

통진당 세력들은 위와 같은 50여개의 이른바 **통진당 아바타 조직**을 기반으로 2016년 2월 27일 오전에 **민중연합당을 결성**하고, 오후 3시에 서울광장에서 4차 민중 총궐기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진당 세력들은 현행 정당법 제40조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강령(기본정책)과 동일·유사한 정당의 창당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형식적 요건만 구비하면 정당등록 거부할 수 없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표면적으로 **통진당 색깔을 철저히 은폐**하면서 창당 작업 즉 **통진당 재건작업**을 진행하였다.

실제 민중연합당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전국노동자추진위원회'(일면 '비정규직철폐당', 대표 강승철, 2016.1.27. 결성), '청년추진위'(일명 '흙수저당', 대표 손솔, 2016.1.13 결성)와 '농민추진위'(일명 '농민당', 대표 이광석, 2016.2.2. 결성)를 중심으로 창당 작업을 진행하였다. 여기에 좌편향 단체들인 민주노동자전국회의(노동), 전농(농민), 한대련(청년) 조직원들을 전면에 포진시켰다.

민중연합당은 창당대회에서 당 강령 없이 '창당선언문'과 '12대 기본정책'만을 발표하며 통진당과의 연계성을 철저히 은폐하였는데, "국보법폐지, 국정원 해체, 평화협정체결" 등 일부 통진당 강령을 수용하면서도 통진당 해산의 결정적 사유였다고 평가받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진보적 민주주의' 등을 삭제하는 교묘함을 연출시켰다.

민중연합당 관계자들은 자신들은 **통진당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진보정당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표1〉을 보면 통진당 지역당 책임자들이 **100% 통진당 출신**임이 확인할 수 있다.

【표 1】 민중연합당 1기 광역시도당 주요 인물

▶박철우(서울 공동위원장) : 2012년 통진당 '민주수호청년특위' 소속
▶김경훈(경기 공동위원장) : 2014년 통진당 이천시장 선거 후보
▶이수연(인천 공동위원장) : 2013년 통진당 인천시 부위원장
▶이경석(인천 공동위원장) : 2014년 통진당 인천남구의회 의원선거 후보
▶이승재(강원 원주乙 후보) : 2014년 통진당 강원도지사 선거 후보
▶김도경(충북 공동위원장) : 2014년 통진당 충북도의회 의원 후보(청주)
▶박석준(대구 공동위원장) : 2014년 통진당 대구시의회 의원 후보(비례2번)
▶이대동(대구 공동위원장) : 2014년 통진당 대구 북구의회 의원 후보
▶석성만(경북 공동위원장) : 2006년 민노당 경북도의회 의원 후보(고령군)
▶오은미(전북 남원·임실·순창): 2013년 통진당 전북도당 위원장
▶나인욱(광주 공동위원장) : 2013년 통진당 광주시당 선거관리 위원
▶전종덕(전남 공동위원장) : 2012년 통진당 중앙대의원

또한, 창당초기 통진당 세력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이들이 공개했던 흙수저당 청년창당추진위원 103명은 이른바 '이석기 키즈(KIDS)'로 불리던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과 이석기의 CNP전략그

룹으로부터 선거자문을 받은 한대련 및 그 산하단체인 대학생문화연대 출신들이었고, 이들 상당수는 2012년 **통진당 분당사태 당시 김재연 제명 반대 또는 당 사수 청년당원 선언에 참가**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표 2】 흙수저당 청년추진위원 인적구성

▶김선경(당 청년중간조직장) : 2009년 청소년공동체 희망 교육인권부장
▶김수정(당 청소년중간조직장) : 2011년 청소년공동체 희망 회원
▶문일평(흙수저당 창당 청년추진위원) : 2011년 청소년공동체 희망 카페지기(서울1호점)
▶박철우(흙수저당 부대표) : 2007년 청소년공동체 희망 회원
▶백성균(서울시당 연합사무처장) : 2008년 청소년공동체 희망 사무국장
▶봉인권(흙수저당 창당 청년추진위원) : 2011년 대학희망 대표
▶송명숙(서울시당 공보담당) : 2012년 한국대학생문화연대 대표
▶연미림(흙수저당 집행위원장) : 2011년 희망청년회 대표 겸 청소년공동체 희망 후원회장
▶이근미(20대 총선 서울구로갑 후보) : 2005년 청소년공동체 희망 사무국장
▶이재각(흙수저당 창당 청년추진위원) : 2012년 한국대학생문화연대 사무처장
▶주무늬(대전시당 준비위 공동대표) : 2014년 충청지역 대학생문화연대 대표

2. 민중연합당의 제20대 총선 출마자 성향

자유민주연구원 분석 결과, 구 통진당 세력이 제20대 총선거에 **무려 66명이 출마**하였다. 민중연합당 총선출마자(총60명) 중 **92%에 해당하는 55명이 통진당 활동 경력자**이다. 나머지 11명은 무속으로 출마하였다. 이중 이석기 내란선동사건(일명 RO)사건시 비밀회합에 참석한 실질적인 **RO성원도 12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민중연합당은 총선 과정에서는 비례대표 1번에 '통진당 중앙위 폭력사태'(2012.5.12.)에 학생당원을 통솔한 정수연(여, 27세, 「평화나비」 간사, 현 민중연합당 대변인)을 배치시키는가 하면, 통진당 핵심인물이었던 통진당출신 전 국회의원 김재연, 김선동, 이상규 등이 입당하고 총선 출마까지 하였다.

민중연합당의 20대 총선 출마자 현황에서 보듯이, **민중연합당이 명백히 통진당 후신**임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통진당 출신 전 국회의원인 이상규는 2016년 3월 10일 양심수후원회의 집회장에서 "민중연합당은 통합진보당과 출발부터 다른 정당이며 당원이 3만 명에 육박해 가는데 일부 한 두 명

의 성향이나 출신 때문에 전체 당을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민중연합당이 제2통진당이라는 주장을 일축하려 했으나, 새빨간 거짓임을 알 수 있다.

【표 3】 구 통진당 세력의 20대 총선 출마 및 당선 현황

	총선출마자	구 통진당 세력(RO 포함)	RO세력	당선자
민중연합당	60명	55명 (92%)	11명	-
무소속		11명	1명	2명
총 계		66명	12명	2명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중연합당은 출마자 55명(지역 51, 비례 4)이 전원 낙선했고, 정당득표에서 145,624표(0.61%)를 획득하는데 그쳤다. 울산지역에서만 통진당 출신 2명(김종훈, 윤종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에 민중연합당에 여성추천 보조금 91,375,130원을 지원**(2016.3.28.)했는데, 이는 통진당 세력을 회생시켜 주는 자금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3. 제2기 민중연합당의 지도부 분석

민중연합당은 총선 직후 조직재편 작업 착수한다. 당 조직은 6월부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로 변경되고 2개월 간 지역 당직자 선출 등 준비기간을 거쳐 8월 14일 전당대회를 열어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고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현재 민중연합당은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북 · 전북 등 전국 11개 광역시 · 도에 당 조직을 결성하고 당원이 2만 2천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진당의 핵심세력이었던 범(汎) 경기동부연합은 민중연합당 당직선거에서 중앙 및 지역당직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지난 8월 16일까지 집계한 민중연합당 중앙당 및 지역당 당직자는 총 129명인데, 지역별로 이석기의 'RO' 근거지였던 경기도당이 가장 많은 51명(40%)을 선출하였고, 광주 24명(19%)과 서울 17명(13%)이 그 뒤를 이었다. 직군별로 노동자당(민주노동자전국회의) 21명, 농민당(전북 · 전남전농) 13명, 흙수저당(한대련 · 청년연대) 11명 순이었다.

당직자는 **RO출신 26명**과 민주노총 내 종북편향 단체인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17명을 포함하여 129명 중 105명(81%)이 범(汎) 경기동부연합 출신들로 포진되었다.

특히, 민중연합당 신임 상임대표 김창한(51세)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출신이고, 구 통진당 최고위원이자 이석기를 추종하는 유선희(여)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선희는 민족민주혁명당 시절 이상규의 하부조직원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헌법재판소 위헌정당해산 결정문에도 언급되어 있음)

최근 선출된 민중연합당 지역 당직자와 총선 출마자까지 포함하여 **핵심인물은 300여명**이고 이 중 과거 **통진당 당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물은 230여명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석기의 혁명조직 **'RO' 조직원**으로 2013년 5월 내란선동 마리스타회합에 참석했던 **통진당 경기도당원도 4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14일 민중연합당 전당대회를 전후로 일부 언론에서 "민중연합당은 통진당 재건이나 유사정당", "통진당 출신인사가 민중연합당을 장악했다"고 보도한데 대해, 민중연합당은 8월 16일 논평을 내고 "민중연합당은 통진당을 재건한 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진보정당이다, 당원 70%가 생애 처음 정당가입을 했다", "옛 통진당 인사들 상당수가 민중연합당에 참여했다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이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근본에서 옥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까지 주장하였다.

민중연합당이 통진당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위의 분석에서 보듯이, 새빨간 거짓인 것이다. 결코 진실을 거짓으로 덮을 수는 없다.

Ⅲ. 최근 통진당 세력 재건의 문제점

앞의 분석에서 보듯이 민중연합당은 실질적으로 통진당 후신, 즉 **재건 통진당**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을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결정했는데**, 구 통진당 출신들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통진당의 아류격인 민중연합당을 창당하여 대거 총선에 출마하고, 통진당 출신으로 제2기 지도부를 구축한 행위는 위헌정당 해산의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이다.

둘째, **1956년 독일공산당이 해산되었을 때**, 서독에서는 12만 5천명에 달하는 독일공산당원과 관련자(비당원 중 협조자)들이 수사를 받았고 이중 6-7천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었는데도 **사법처리를 받은 사람이 한명도 없다**. 이는 **국가사법당국(검찰, 경찰 등)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통진당의 反헌법적 활동에 주도해온

당원은커녕, 핵심간부들조차도 사법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사법기관이 헌법체계의 훼손를 방치하고 있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위헌정당 해산심판에서 반대의견을 밝힌 김이수 재판관은 친절하게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결정하면, **통진당은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가 되고 **당원 전체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되고, **통진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을 반국가단체 지지자**로 규정하는 것이고 결국 국**가보안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헌정당 결정에 반대했다.(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 중)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올바르게 법률해석을 한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며 위헌정당으로 결정한 상황에서 통진당이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가 되는 것이 명백한데도, 사법당국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통진당 핵심세력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이다. **사법당국은 대오 각성해야 한다.**

Ⅳ. 정책제언

민중연합당은 실질적으로 통진당 후신, 즉 **재건 통진당**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정부당국은 통진당 해산취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무총리 소속 하에 「(가칭) 반헌법 통진당 세력 청산특별조사위」를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여기서는 통진당 관련자 소환조사와 수사지침, 사법처리지침, 관련 백서(反헌법행위 백서) 발간, 법제정비 등 제도개선책 등 反헌법 행위자 처리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둘째, **사법기관은 구 통진당 세력 중 중간급 이상 간부 및 극렬 협조자들을 전원 소환하여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중앙당 및 지방당 핵심간부들을 사법처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따르면 통진당은 폭력에 의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인바,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통진당 핵심간부들을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죄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했지만, 통진당 해산결정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한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결정하면, **통진당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되고 당원들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되고 주도세력에 속한 당원들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친절하게 법해석을 전개

한바 있다.

셋째, **나머지 당원들도 수사하여 사안의 경중을 가려 사법처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사법당국은 이 과정에서 1956년 독일공산당 해산 후 잔당세력 사법처리 사례를 원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통진당 국고보조금 환수 등의 문제이다.** 정치자금법 제30조 1항에 의하면 정당이 해산되면 국고보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0조 2항에서는 보조금 미반환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통진당 해산 후 회계보고에 의하면, 국고보조금 잔액이 238만여원, 후원금 잔액이 747만여 원에 불과하였다.

2014년에만 정부가 통진당에 지원한 보조금은 정당보조금(27.8억)과 지방선거 보조금(28억), 여성추천보조금(4.8억) 등 총 60억7천여 만 원에 달한다. 그런데, 국민상식으로 납득이 안가는 238만 원만 남은 것이다. 통진당이 정당해산을 염두에 두고 해산 직전에 각종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상기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계감사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이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한 정당법 제48조 2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토록 되어있는데, 통진당의 회계보고에 의하면 잔여재산은 2.6억 원에 불과하였다. 이 역시 회계감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가려 관련 후속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정당해산 주무처리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함을 지적한다.

특히 20대 총선에서 20대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중연합당에 여성추천 보조금 9,100여만 원을 지원한 행위는 명백한 법의 허점이다.

다섯째, **정당해산제도의 헌법정신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정당해산이라는 초유의 절차를 진행하다보니, 이 과정에서 많은 법적 미비사항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정당법 상 위헌정당과 인적구성이 같은 정당에 대한 등록거부, 지방의회 의원직 상실문제라든지, 해산된 정당소속의 의원들의 재출마를 제한하는 법규정 그리고 정당해산 청구 시 부터 정당활동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지출 이외에는 회계지출을 제한하는 법규정도 꼭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의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통진당 해산 이후 **사법기관(경찰, 검찰) 및 관련 부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사법절차 및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원의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

다. 이를 통해 이들 기관들의 직무유기 여부를 밝혀내고, 직무유기 부분이 있다면 관련 절차에 의해 의법처리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엄정한 국정감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훼손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기관이 방치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최고통치자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한다.

부록: 헌법재판소 결정문으로 본 통진당의 반헌법성(현법재판소 결정문 요약)

우리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주도세력들이 우리나라를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본가 계급의 정권으로서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중을 착취 수탈하고 민중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한 구조적 불평등사회로 인식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민중이 주권을 가지는 민중민주주의 사회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민족해방문제가 선결과제이므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을 추구한다고 판단하였다.

통진당 주도세력들이 내세운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정부이며, 이들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라는 것이다. 또한 통진당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 증거로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을 들었다.

결국 통진당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통진당 주도세력이 통진당을 장악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들의 목적과 활동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

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조선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치 노선을 절대적인 선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당의 특정한 계급노선과 결부된 인민민주주의 독재방식과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추구하는 점에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또한 통진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는 것이다.

내란 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 통진당의 활동들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위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한다는 것**이다.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등 활동을 하여 왔는데 이러한 활동은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통진당 주도세력의 북한 추종성에 비추어 통진당의 여러 활동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 관련 사건에서 통진당 구성원들이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발제 ②]

통진당 잔당세력 활동의 反헌법성

김 상 겸
동국대 교수

1. 문제의 제기

구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이 2013년 말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었다. 정당해산심판은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어 활동을 개시한 후 처음으로 청구된 사건이었다. 구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지 약 1년이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위헌정당의 강제해산제도는 국가기관이 아닌 사적으로 조직된 정치적 단체인 정당을 헌법에서 보호하는 대신, 정당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헌법재판을 통하여 강제해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정당이 갖는 대국민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질서를 준수하도록 하여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구 통진당에 대한 해산결정에서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상실도 결정하였다. 그런데 실정법에는 정당해산심판으로 해산된 정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렇지만 헌재는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있으므로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경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1)]

그런데 헌재에는 구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주요한 정당구성원 등에 대한 사후조치 내용은 없었다. 이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자, 2015년 초 정부에서는 통진당 관련 잔존세력 가운데 불법적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하여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의원직을 상실한 구 통진당 지역구 의원들이 보궐선거에 재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한 문제에 대하여 헌재도 고민하였지만 명백한 입법미비로 인하여 사후조치가 어려웠고, 이는 지방의원이나 당구성원에도 해당되었다. 이러한 결과 구 통진당 세력의 상당수는 2016년 총선에 아무런 제약 없이 출마하였다.[2)]

1) 헌재 2014. 12. 9. 2013헌다1.

정당해산심판에서 해산된 정당의 주요 구성원이 선거에 출마하고 국정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수호제도인 정당해산심판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헌법에 정당해산심판제도를 도입한 것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두 가지 이념인 자유와 평등을 지키기 위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을 제거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동 제도는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기능을 통하여 정당을 보호하는 기능도 갖는다. 왜냐하면 정당의 위헌적 활동에 대하여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에 의한 엄격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소송절차를 통하여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게 함으로써 집권세력이나 정치권력에 의한 자의적 정당해산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제도가 한편으로는 정당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정당의 특권제도라고 할 수 있다.[3] 그렇지만 헌법재판에 의하여 위헌정당으로 결정되면, 그 정당의 목적에 동의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헌법재판으로서 정당해산심판의 의의와 내용

정당은 헌법기관이나 국가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현대국가에서 동일한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결집된 사람들로 구성된 정당은 대의제민주주의에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헌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한편으로 정당제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당이 헌법현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고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헌법현실로 인하여 정당의 기능과 역할은 확대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당의 역기능으로 인한 폐해도 역사에서 보듯이 작지 않다. 예를 들면 독일의 나치스당은 국가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이는 독일연방공화국이 1949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으로 신설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 이후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법제에 정당해산심판제도를 도입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1960년 헌법에 이어 1987년 헌법에서 제8조 제4항에 정당해산심판을 규정하여 헌법재판으로 명문화하였다.

헌법재판의 일종으로서 정당해산심판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절차를 통하여 해산시킴으로서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려는 것이다.[4] 정당해산심판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결성되어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절차에 따라 해산시켜 정당의 형식

2) 이에 대해서는 유동열, "구 통진당 세력 20대 총선출마의 문제점과 대책 – 위헌정당 해산의 헌법정신이 실종되고 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자유민주연구원 주최 공동토론회 자료집(2016. 4. 4), 3면 이하 참조.

3) 우리나라는 1960년 헌법개정에서 처음으로 위헌정당해산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그 이유는 성숙하지 못한 정당민주주의에서 정부에 의한 부당한 야당탄압을 방지함으로써 정당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당의 위헌성을 차단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논거이다.

4) 허영, 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10, 272면.

으로 조직된 헌법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려는 제도이다.[5] 즉 정당해산심판은 헌법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위헌정당으로부터 사전에 그 위험이나 위협을 차단하려는 사전예방적 헌법수호제도이다.[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산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기초한 정당에 대한 규제는 본질상 예방조치이며 미래에 대한 준비이다."라고 하여, 정당해산제도가 헌법질서를 준수하기 위한 사전의 예방조치라고 하였다.[7]

우리나라 헌법 제8조 제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에 근거하여 제2조에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해산심판에 대해서는 제4장 특별심판절차 제3절에 제55조부터 제60조에 걸쳐 절차와 결정의 효력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나아가 정당법은 제40조에서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이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창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41조 제2항에서는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정당법 제47조와 제48조는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등록말소와 잔여재산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해산요건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으로부터 보호받는 정당이 그 목적이나 활동에 있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할 때 해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헌법조항의 문맥을 보면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거나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거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경우를 다 포함한다. 즉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란 두 가지 요소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경우에만 정당해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경우 정당해산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해산의 요건을 보면, 정당설립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그 자유는 헌법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일 뿐 헌법질서를 벗어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8조 제2항에서 보듯이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 조항은 정당의 목적 그 자체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헌법이 정당에게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원리에 부합되도록 그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

5)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3, 1492면.
6) 정당의 위헌적 행태가 그 활동을 통하여 헌법의 침해나 파괴가 현실화되면,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공권력을 통한 사후교정적 방법을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정당해산심판은 사전예방적 헌법수호제도일 수밖에 없다.
7) BVerfGE 5, 85 (142).

일반적으로 정당의 목적은 강령이나 정책, 당헌과 당규, 연설내용 출판물 등을 통하여 인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당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일을 통하여 정당의 전체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인간이 실현하고 싶어 하고 그 때문에 행동의 목표로서 설정하는 것으로 그것은 적어도 주관적으로는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목적이라고 할 때, 정당해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의 목적은 적어도 주관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할 정도의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이다.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해산의 요건으로 정당의 목적뿐만 아니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 정당의 활동범위에는 정당 자체의 활동뿐만 아니라, 정당에 귀속되는 당 구성원들의 활동도 포함된다. 특히 정당의 목적은 대부분 정당 자체나 구성원들의 활동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정당의 활동을 통하여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정당의 활동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제거를 할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구체적 위험성이 없다 하여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할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정당의 목적을 정당의 대표나 정당의 행위로 귀속되는 당 구성원의 발언이나 연설을 통하여 드러낸다면, 이러한 발언이나 연설 등은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당 활동의 구체적 위험성은 현실적으로 표출되는 정당과 정당의 구성원들의 발언이나 행동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해를 가할 구체적 위험성이란, 현실적으로 헌법질서의 파괴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고, 정당의 활동이 국민의 헌정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위헌성이 확인될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3. 위헌정당 구성원 활동의 제한 필요성

이상에서 보듯이 구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헌재에 의하여 해산결정이 났다면, 구 통진당의 소속 구성원들도 위헌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독일은 1952년 사회주의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위헌결정을 하면서 소속 연방의원과 주의원에 대하여 자격상실을 함께 결정하였다. 당시 독일은 소속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정당해산심판의 취지에 따라 위헌정당의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아 상실을 결정하였고, 그 후 이를 법제화하였다. 그리고 독일은 1956년 독일공산당 정당해산심판에서는 위헌으로 결정된 후, 당원과 관련자 전체를 수사하여 형사처벌하였다. 또한 의원직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였고, 헌법에 적대적인 활동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였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를 도입하였지만, 해산과 함께 후속조치에 대한 입법이 거의 없다. 물론 2013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의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격상실과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된 위헌정당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입법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헌법상 정당해산심판은 위헌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다. 헌법이 요구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준수하는 정당만이 헌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정당뿐만 아니라 정당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당원이나 관계자에 대해서는 그 정도를 수사하여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자격상실과 피선거권 제한 및 공무담임권 제한 및 형사처벌을 구체화하여 법제화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고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연구원·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통진당 잔존세력의 반국가활동,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 론

[토론 ①]

통진당 잔존세력의 반국가활동,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 동 호
자유민주연구학회 사무총장/ 前 전대협 국장

대한민국에 대해 반국가·이적활동을 하던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지 21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지만 통합진보당의 핵심인사들은 여전히 활동 중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핵심인사들은 '민중연합당'이라는 정당을 구성하여 총선에 임했다. 정당은 해산되었지만, 정당에 속한 인사들은 대한민국 현행법의 미비 속에서 자유롭게 그들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는 이들의 활동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들의 활동을 금지 시킨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이후 후속조치를 현행법의 미비와 공안당국의 의지부족으로 제대로 하지 못했다.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공산당에 대한 위헌 판결 이후 공산당 소속 활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이들에 의한 공산당의 활동을 전면 금지 시킨 사례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후속조치가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통합진보당의 활동과 강령이 명백히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과 같고, 이들의 활동을 반국가·이적활동이라고 판시하였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주도세력의 강령상 목표는 1차적으로는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하게 된 경위 및 과정, 피청구인 조도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변혁을 위한 경령적 과제와 순위, 변혁의 주체 및 주권의 소재와 그 범위, 변혁의 대상, 변혁의 전술적 방법, 변혁의 목표, 연방제 통일방안 등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고, 이러한 동일성 내지 유사성은 단편적 또는 부분적 범주를 넘어선 것인 점도 앞서 본 바와 같다."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북한의 혁명론에 입각한 활동이었다면 이들의 활동을 수사하여 처벌하는 후속조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었다. 또한 이들 구성원들의 유사활동에 대해서도 명백히 활동을 제한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해야 마땅한 것이다.

첫째, 통합진보당과 그 활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향한 이들의 반국가·이적활동이 발본색원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진보당 활동가들의 유사정당 활동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후속 법률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에 제안되었다 실현되지 못한 범죄단체해산법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②]

통진당 잔존세력의 반국가 활동,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 옥 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1. 통진당 해산 이후 잔존세력 활동 현황

□ 통합진보당 해산과 당원의 결집

- o 2014년 12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反국가활동으로 헌법재판소의 해산 선고를 받고 해체됨
- o 정당이라는 조직은 법의 심판을 받아 해체되었으나 그 조직을 이루었던 구성원들은 법적 제약을 받지 않고 합법적 공간에서 활동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함
- o 통진당 해산은 구성원들의 장외 결집을 강화시켰고 잔존 세력들의 원내 진입 저지 장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호시탐탐 제도권 진입을 시도함.

□ 통진당 해산 후, 잔존세력의 주요 활동 현황

- o 2015년 2월: 통진당 출신 이상규, 김미희 4월 재보궐 선거 출마
- o 2015년 3월: 통진당 출신 이상규, 김미희, 김재연, 허태열, 홍준표, 홍문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 o 2015년 8월: 통진당 출신 김재연, 안동석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이정희 전 대표와 전 최고위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비판
- o 2015년 9월: 통진당 출신 국가인권위원 후보 박영희, 국회인사청문회 부결
- o 2015년 11월: 검찰 불법 정치자금 위반 통진당 출신 의원들 불구속 기소 방침 발표
- o 2015년 12월: 김일성 3부자 생일 챙긴 통진당 출신 한의사 "종북단체" 적발
- o 2015년 12월: 이정희 전 대표 등 5명 기소 면하고 불법자금으로 규정되었던 6억 원 환수 면함
- o 2015년 12월 통진당 출신 대의원 북 대남 조직 접촉으로 실형 확정
- o 2016년 1월: 전주지법,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 상실한 전북도의회 비례대표 이현숙

의원활동 정당성 인정

- 2016년 2월: 통진당 출신 의원 “민중연합당” 창당
- 2016년 4월: 통진당 출신 김종훈, 윤종오 제20대 국회의원 당선
- 2016년 5월: 헌법재판소, 통진당 출신 의원들이 낸 통진당 해산결정 재심 청구 각하
- 2016년 7월: 통진당 출신 윤종오 의원 선거법 위한 관련 압수 수색
- 2016년 7월: 성주 사드 배치 반대 시위에 옛 통진당 인사가 포함된 민중연합당 조직원 활동
- 2016년 8월: ‘경기 815선언(조건 없는 5.24 대북 제재 조치 철회, 개성공단 전면 재가동, 사드 배치 결정 철회, 북한 겨냥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요구)’ 에 김재연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소속 의원 16명 동참
- 2016년 8월: 민중연합당 전당대회. 김미희, 오병윤, 김재연 등 참석. 새 지도부 선출하였고, 새 지도부에 옛 통진당 인사(김창환 전 통진당 노동위원장, 정태흥 통진당 서울시당위원장, 안주용 통진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등) 다수 포함.
-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통진당 구명 토론회”
- 2016년 9월: 옛 통진당 윤종오·김종훈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 2016년 9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통진당 출신 간부 유죄확정

2. 통진당 잔존 세력 外 안보위해세력 활동 현황

□ 안보위해세력(이적단체)이란?

-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적단체」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단체를 의미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 의하면, 현재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단체 40여개가 활동 중이라고 함

□ 안보위해단체 현황(※출처: 국가정보원)

① 민자통(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1990.08.28 대법원)

: 주체사상 등 종북사조를 전파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미군 철수·연방제 통일과 같은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동조하며 과격투쟁을 선동

② 범청학련 남측본부 (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1993.09.28 대법원)

: 북한과 연계하여「한총련」의 反미종북투쟁을 배후조종하고 조직적인무력선동을 위해 이적표현

물을 제작 하고 물리력에 의한 폭력시위 주도

③ 범민련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1997.05.16 대법원)

: 북한 공작조직과 연계하여 공작금을 수수하면서 국내 정세를 수집하여 북한에 보고하는 간첩활동을 하고, 적화 통일을 선동

④ 한총련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1998.07.28 대법원)

: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찬양·동조하고 미군철수·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각종 반정부 폭력시위 자행

⑤ 한청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해산, 2009.01.30 대법원)

: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노선에 입각한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각종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북한「사회주의 청년동맹」과 회합하며 불순활동

⑥ 실천연대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2009.07.23 대법원)

: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하면서 각 분야 운동권에 반미·종북논리를 개발 보급하는 종북세력의 두뇌 역할을 수행

⑦ 청주통일청년회(2011.12.08 대법원)

: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동조, 민간통일운동을 빙자한 '통일전선체 구성·대중 의식화 교육·반미투쟁 활동' 등을 전개

⑧ 연방통추(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2012.01.27 대법원)

: 북한과 연계, 강령·규약을 통해 주한미군철수·국보법 철폐 후 고려연방제 통일 실현을 위한 실천활동 전개

⑨ 사노련(사회주의노동자연합, 해산, 2014.08.20 대법원)

: '자본가 정부타도, 미제축출, 사회주의건설' 전략 아래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 선전 및 反 자본주의 과격폭력투쟁을 선동

3. 통진당 잔존세력 및 안보위해세력 저지를 위한 대안

□ 제19대 국회 안보위해세력 활동 저지를 위한 주요 입법활동 (【표 1】 참고)

【표 1】제19대 국회 안보위해세력 활동 저지 관련 법안

대표발의	관련법	비 고
심재철	범죄단체해산법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단체나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단체 등에 대해 해산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과 국민생활 안전보장

대표발의	관련법	비 고
김진태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3년 9월 헌재의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의원·지방의원·지자체장에 대해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
이노근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 전 5년 간 후보자의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공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관한 것으로, 옛 통진당 출신들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지방선거 등에서 새로운 당으로 출마할 때 통진당 경력을 유권자에게 알려야 함.※ 현행법에선 후보자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사항을 선거공보 등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국회에서의 처리결과**

- o 대부분의 안보위해세력의 활동 저지를 위한 법안들은 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됨
- o 제20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관련 법안들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

□ **안보위해세력의 활동 저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

① 안보위해세력의 反헌법/反국가적 행위에 대한 개별 처벌

: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을 폭력에 의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규정하였음. 이는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함. 따라서 반국가단체에서 활동하였거나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사법처리를 해야 할 것임

② 안보위해세력의 활동 및 실태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공개

- 일본의 법무부 산하 공안조사청(公安調査庁, The Public Security Intelligence Agency)은 매년 국내외 정세 전망 및 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일본어와 영어로 일반국민들에게 공개
- 북한의 동향 및 조총련, 중국, 러시아, 중동/북아프리카, 국제 테러 조직의 동향 및 활동 내역 조사 및 공개
- 일본 국내 오옴진리교, 극좌파 세력, 일본공산당, 반정부세력의 활동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 (【그림 1】 참고)

【그림 1】일본 공안조사청의 국내외정세분석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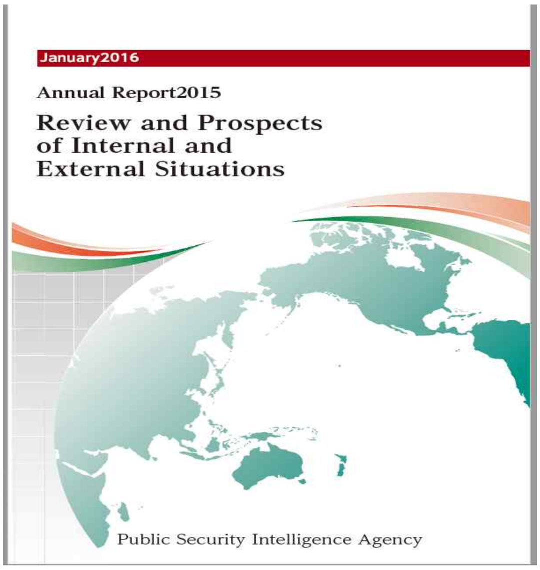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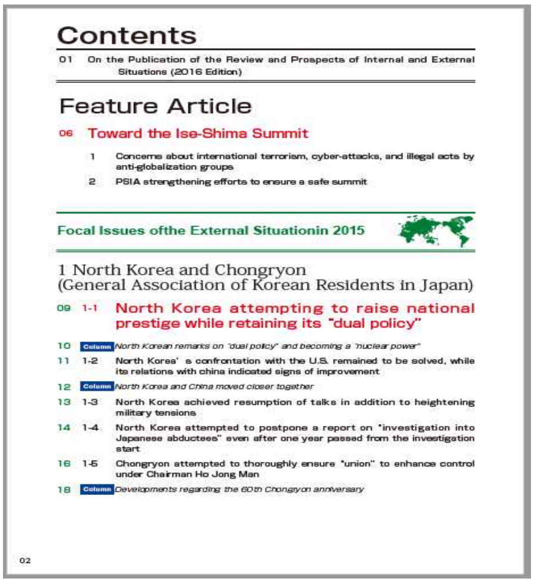

Contents

01 On the Publication of the Review and Prospects of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s (2016 Edition)

Feature Article

06 Toward the Ise-Shima Summit
1 Concerns about international terrorism, cyber-attacks, and illegal acts by anti-globalization groups
2 PSIA strengthening efforts to ensure a safe summit

Focal Issues ofthe External Situationin 2015

1 North Korea and Chongryon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09 1-1 North Korea attempting to raise national prestige while retaining its "dual policy"
10 Column North Korean remarks on "dual policy" and becoming a "nuclear power"
11 1-2 North Korea' s confrontation with the U.S. remained to be solved, while its relations with china indicated signs of improvement
12 Column North Korea and China moved closer together
13 1-3 North Korea achieved resumption of talks in addition to heightening military tensions
14 1-4 North Korea attempted to postpone a report on "investigation into Japanese abductees" even after one year passed from the investigation start
16 1-5 Chongryon attempted to thoroughly ensure "union" to enhance control under Chairman Ho Jong Man
18 Column Developments regarding the 60th Chongryon anniversary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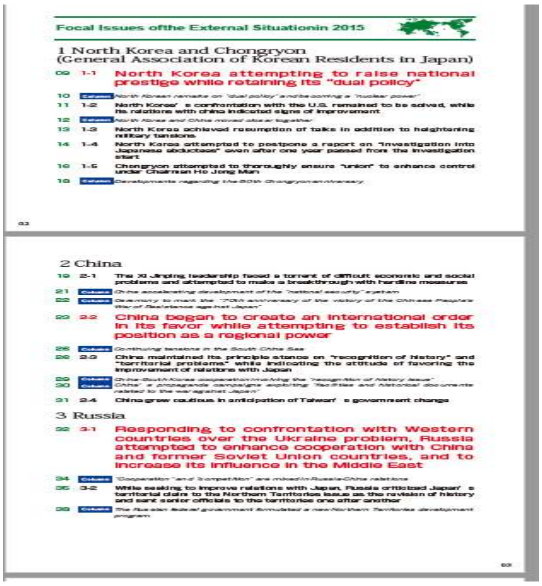

Focal Issues ofthe External Situationin 2015

1 North Korea and Chongryon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09 1-1 North Korea attempting to raise national prestige while retaining its "dual policy"
10 Column North Korean remarks on "dual policy" and becoming a "nuclear power"
11 1-2 North Korea' s confrontation with the U.S. remained to be solved, while its relations with china indicated signs of improvement
12 Column North Korea and China moved closer together
13 1-3 North Korea achieved resumption of talks in addition to heightening military tensions
14 1-4 North Korea attempted to postpone a report on "investigation into Japanese abductees" even after one year passed from the investigation start
16 1-5 Chongryon attempted to thoroughly ensure "union" to enhance control under Chairman Ho Jong Man
18 Column Developments regarding the 60th Chongryon anniversary

02

2 China
19 2-1 The Xi Jinping leadership faced a torrent of difficult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and attempted to make a breakthrough with hardline measures
21 Column China accelerating develop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system
22 Column Ceremony to mark the "70th anniversary of the victory of the Chinese People's War of Resistance against Japan"
23 2-2 China began to create an international order in its favor while attempting to establish its position as a regional power
26 Column Continuing tensions in the South China Sea
26 2-3 China maintained its principle stance on "recognition of history" and "territorial problems" while indicating the attitude of favoring the improvement of relations with Japan
29 Column China-South Korea cooperation involving the "recognition of history issue"
30 Column China' s propaganda campaigns exploiting "facilities and historical documents related to the war against Japan"
31 2-4 China grew cautious in anticipation of Taiwan' s government change

3 Russia
32 3-1 Responding to confrontation with Western countries over the Ukraine problem, Russia attempted to enhance cooperation with China and former Soviet Union countries, and to increase its influence in the Middle East
34 Column "Cooperation" and "competition" are mixed in Russia-China relations
35 3-2 While seeking to improve relations with Japan, Russia criticized Japan' s territorial claim to the Northern Territories issue as the revision of history and sent senior officials to the territories one after another
38 Column The Russian federal government formulated a new Northern Territories development program

03

- 반면, 우리나라는 1페이지 분량으로 공개되어 있음(【그림 2】 참고)

-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적단체들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움.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당국은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펼쳐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가치를 지켜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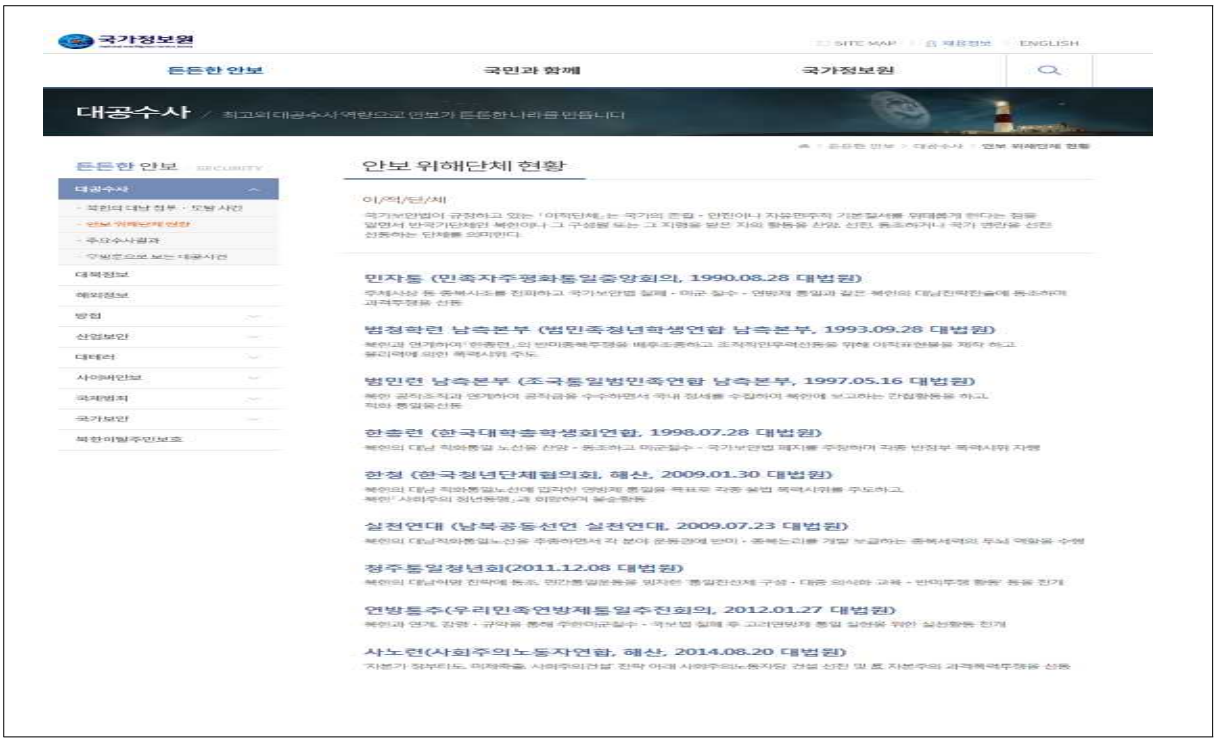
【그림 2】 우리나라 안보위해단체 알림 현황